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5 선고 2014가합58424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5. 26.

판결 선고 2015. 6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. 10. 8. 접수 제81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망 C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0. 9. 7. 사망하였고,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그 상속인들 중 한명인 사실, 피고는 2014. 9. 22.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

대리인으로 행세한 D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0. 8. 그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그렇다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,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마용주

판사성준규

판사이정아

별지